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442
- 제안자 : 박기열 의원(찬성의원 28명)
- 제안일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 : 2021년 6월 1일

### 2. 제안이유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
- 본 조례의 별지1호 헌액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 명예의 전당 관련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 태안군, 남해군 등의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별지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별지 서식).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입법예고(2021. 6. 4. ~ 6. 11.)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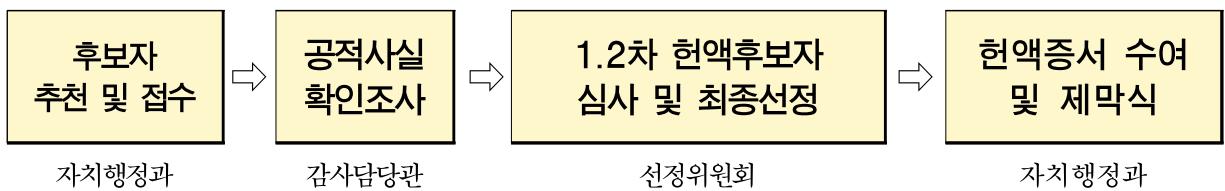
-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시 제출서류인 ‘헌액후보자 추천서’와 ‘공적조서’에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바,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별지1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b>별지1호 서식</b>					<b>별지1호 서식</b>				
<u>헌액후보자 추천서</u>					<u>헌액후보자 추천서</u>				
후보자명 (단체명)	한글		성 별		사 진	---	---	-----	-----
	한자								
주 소 (소재지)				3.5cm×4.5cm					
주민등록번호 (단체인 경우 는 등록기관 및 등록번 호 기재)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번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	-----	생년 월일	-----
1									
2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번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	-----	생년 월일	-----
1									
2									
이하 생략					이하 생략				
<u>공 적 조 서</u>									
성 명 (단체명)	(한자)			관리 번호	기재생략	----	-----	---	-----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단체)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u>공 적 조 서</u>									
성 명 (단체명)	(한자)			관리 번호	기재생략	----	-----	---	-----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단체)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표기									
※ ----- 생년월일 -----									

- 입법취지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명예의 전당’ 설치에 따른 헌액후보자 추천 및 선정시 필요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치 : 시청역 ⇔ 시민청 연결통로 벽면(1개 당 60cm×40cm)
- 선정인원 : 매년 유공시민 10명 이내
- 선정대상 : 시민상(대상)· 시민표창 수상자, 일반시민 및 단체
- 추진절차



### ○ 부조 전시 현황

- (설치장소) 시청역(1호선) 5번 출구와 시민청 연결통로 벽면
- (설치규모)  $6.5 m^2$ ( $5.4m \times 1.2m$ , 헌액 10명 기준)  
※‘왼쪽’으로 확대
- (부조상 디자인) 동판( $60cm \times 40cm$ ), 사진 및 주요공적 삽입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헌액대상자 자격 및 인원) ① 헌액대상자는 헌액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선정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2.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3.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등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암호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행정국은 2018년도부터 후보자 추천공모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상 별지서식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개인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011.3.29.))에도 부합하고, 공공기관의 서류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시와 같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수원시, 경남 남해군, 충남태안군, 대전시 동구)에서도 관련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2011. 3. 29.)된지 상당기간이 지났고, 행정안전부 또한 2011년부터 관공서 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서울시는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바, 향후 행정국은 이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국은 헌액후보자 추천에 따른 기존 문서들의 개인정보 수집·유출·오용·남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행정국 소관 조례 및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16년 설치운영중인 ‘명예의 전당’은 2020년 기준 총32건 (개인 25명, 단체 7건)이 헌액되었으며, 설치 장소로 시청역 5번출구와 시민청 연결통로 벽면을 활용하고 있는 바, ‘명예의 전당’의 장기 운영에 따른 장소의 제약 요인은 없는지 여부와 서울시 산하 공공시설 등 별도의 공간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소계	개인	단체	소계	개인	단체	소계	개인	단체		
접수인원	36	24	12	34	30	4	41	26	15	58	108
헌액인원	5	2	3	6	5	1	4	3	1	7	10
경쟁률	7.2:1			5.7:1			10.3:1			8.3:1	10.8:1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